

# 생활보호에서 지켜주실 사항 ~ 수입 등의 신고에 관해 ~

<레이와 8 년(2026 년)7 월판>



지바시 ○ 보건복지센터 사회원호과

전화 043-○○○-○○○○

## I 수입이나 세대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

생활보호를 받는 동안, 여러분의 세대에 수입이 있거나 세대원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센터의 사회원호과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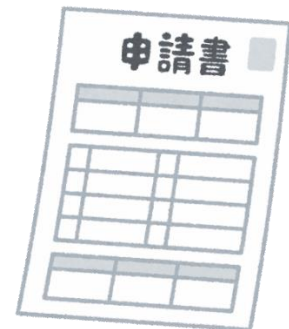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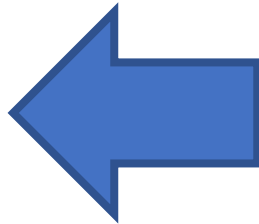
### 1 수입 및 자산 신고

#### ① 일하고 얻은 수입

일한 댓가로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.

- 사례**
- 정기적 수입 (매월 급여 등)
  - 임시적 수입 (보너스, 일당 급여 등)
  - 미성년자 (고등학생 포함)의 아르바이트 수입 등

※ 제대로 신고하면, 일하고 얻은 수입의 일부 (필요 경비 등)는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고, 생활보호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

#### ② 일한 댓가가 아닌 수입

연금이나 송금·원조 등, 일로 인한 것이 아닌 수입이 있을 때도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.

- 사례**
- 연금이나 아동수당 등의 공적수당의 수입
  - 생명보험의 입원급여금 및 해약환급금
  - 세대원외 사람으로부터의 송금이나 원조
  - 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손해배상금
  - 동영상 서비스나 광고에 의한 수입
  - 인터넷 옥션이나 플리마켓 사이트의 매출금(포인트) 등

※ 생활보호 수급 중에 빚을 빌리거나 갚는 것은, 인정된 것 외에는 해서는 안됩니다. 생활보호비로 빚을 갚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. 생활보호비로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, 생활보호가 정지 혹은 폐지 될 수 있습니다.

### ③ 자산

자산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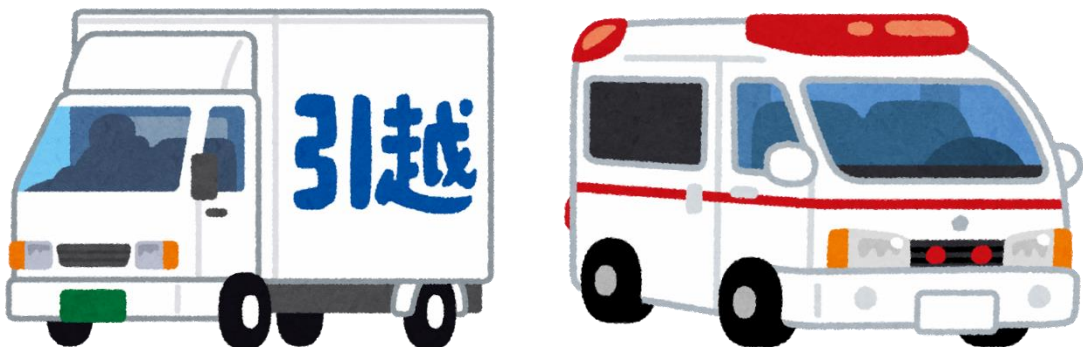
- 사례**
-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
  - 각종 보험 (생명보험, 교육보험, 손해보험 등)
  - 자동차나 고가 귀금속류 등



## 2 세대 상황의 변화 신고

가족이 늘었을때나 줄었을때,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.

- 사례**
- 이사 (전출 혹은 전입)
  - 입원 혹은 퇴원
  - 출생 혹은 사망 등



## Ⅱ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.

-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, 받은 생활보호비를 지바시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고의로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이나 자산을 숨겨서 부정하게 생활보호비를 수급하게 되면 「부정수급」이 되며, 경찰에 고소·고발되거나 반환해야 할 생활보호비에 40%의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지바시는 수입 신고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(과세 조사)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웹과 전화로 접수받고 있습니다.
- 고소나 고발된 경우에도 반환해야 할 생활보호비의 지급은 면제되지 않으므로,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. 지바시에서도 피해 신고를 제출하여 사기죄 등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.
- 필요한 지도·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, 생활보호가 중지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.

### ◆ 생활보호법

제 78 조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호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한 자가 있을 때, 보호비를 지출한 도도부현(都道府県) 혹은 시초촌(市町村)의 장(長)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, 징수할 금액에 100 분의 40 을 더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 85 조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호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Ⅲ 마지막으로

- 생활보호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, 올바르게 신고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궁금한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, 여러분의 담당 케이스워커에게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.